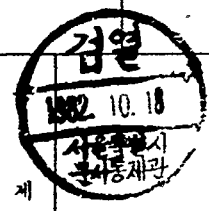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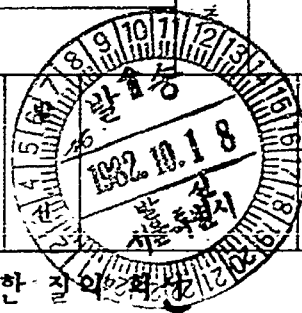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200- 3148	(전화번호 521 )	전결 규정 4 조 1항 가 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82.10		
보존년한			
보조기관	인사과장	전결	협
	보임1계장	당	
기안책임자	이현구	82.10	
경유 수신 참조	과안 참조		
제목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질의 회신		
(제 1안)			
수신 내부 결재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지방별정직7급상당(주의사)의 정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는바, 별안과 같이 회신코자 합니다.			
1. 질의 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규정의 적용			정서
여부			
나. 연령의 제한없이 계속 근무 가능 여부			관인
다. 별정직 기술직 (주의사)로 특무 연장 (3년)의 가능 여부			
(제 2안)			
수신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제목	등 건		
1. 어공 200 - 594 (82.10.6)호에 대한 회신임.			

기안

10.18



2. 질 의

" 제1안 이기시험 "

3. 답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당시에서는 현재 등 조례 제정 추진중에 있음. 끝.

# 9. 地方公務員法(1963年 11月1日 法律 第1427號公布)

1963.12.16	法律第1550號	1973. 3.12	法律第2594號	改正
1966. 4.30	法律第1794號	1976. 4. 1	法律第2892號	
1967. 2.28	法律第1889號	1978.12. 6	法律第3152號	
1968.12.23	法律第2058號	1961. 4.20	法律第3448號	
1972.12.26	法律第2381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適用한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확립하여 地方自治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公務員의 區分) ① 公務員은 이 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區分한다.

② “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一般職公務員: 技術·研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며 職群·職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地方自治公務員과 기타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務職公務員  
가.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

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나. 기타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政務職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2. 別定職公務員

가. 秘書官·秘書

나. 邑長·面長·市의 洞長. 다만, 條例로 一般職公務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別定職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專門職公務員: 地方自治團體와 採用契約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研究 또는 技術業務에 종사하는 科學者·技術者 및 特殊分野의 專門家

4. 屬僚職公務員: 단순한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專門職公務員 및 屬僚職公務員의 任用條件·任用節次·(停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81.4.20 法 3448]

第3條 (適用範圍) 이 법의 規定은 第5章 報酬 및 第6章 服務의 規定을 제외하고, 이 법·기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特殊經歷職公務員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지정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57條와

이천이대공원관리사무소

이공 200-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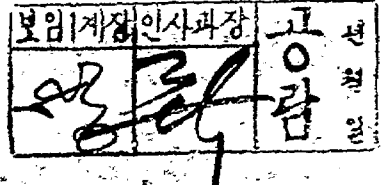
445-7054

82. 10. 6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인사과장

제목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해 관한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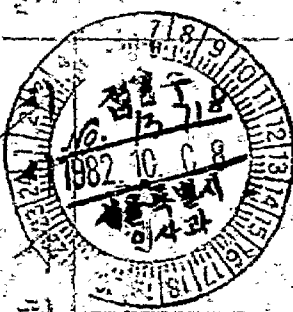


1. 당공원에 별정직 7급 (수익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정년규정에 명시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규정의 적용 여부
- 2) 연령의 제한없이 계속 근무의 가능 여부
- 3) 별정직 기술직(수익사)도 복무연장(3년)의 가능 여부. 끝.

주 발 인	이천이대공원관리사무소
1982. 10. 7	인사과
가	가
12672	



이천이대공원관리사무소